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108
----------	--------

제출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타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 ~ 제4조)
- 나.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제6조)
- 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안 제7조 ~ 제8조)
- 라.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바. 시행규칙(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8. 10. 11. ~ 2018. 10. 31. (의견제출 없음)

- 2)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 동의
- 3)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권고사항 있음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8. 11. 8.)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1부
-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행정과 유성란
연락처	02-3153-8804